4+36/0 F11	보 도 자 료			수도간	수도권매립지 종료	
なるといれている。	배포일자	2022년 :	5월 26일(목) 총 4매	환7	( ) 명특별시 인천	
담당 장애인복지과	담 당 자	• 장애인권으 • 담 당 자		임석봉 ☎4 안재석 ☎4		
사진(이미지)	■ 없음	음 🗆 있음	참고자료	□ 없음	■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	시 보도하여	주시기 바립	니다.		

# 인천시, 군·구 자치법규 장애 차별 용어 개선한다

- '심신장애' 를 '질병 등의 일신상의 시유' 로, '일반인' 을 '비장애인' 으로 개정 -

인천시가 장애 차별적 용어를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나선다.

인천광역시는 자치법규 상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10개 군·구에 공유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가 일괄정비 될 수 있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개선안은 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의뢰한 '자치법규 등의 장애 차별적 용어 조사연구(이하 조사연구)'용역 결과를 근거로 했다.

이번에 개선되는 용어는 총 4가지로 △ '심신장애'를 각종 위원회의 해촉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'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'로 △ 장애를 결격사유(피성년후견인 등)로 하는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하며 △ '일반인' 같이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암시하는 경우는 '비장애인'으로 △ '장애극복'과 같이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.

인천시 의회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'인천시 조례의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 조례(46개)(이하 일괄정비 조례)'를 제정(조선희 의원발의) 한 바 있다.

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"인천시는 조사연구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됐으나 10개 군·구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장애 차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"며 "장애 차별적 용어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통해 각 군·구의 자치법규에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."고 전했다.

## 참고

## 인천시 자치법규 상 장애 차별적 용어 조사연구 및 개정안

#### □ 조사연구 실시

- (연구명칭) 인천시 자치법규 등의 장애 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연구
- (수행기관) 인하대 산학협력단
- (연구기간) '21. 3월 ~ 10월
- (내 용) 인천시 자치법규(963개) 중 장애 차별적 용어를 선정하고, 차별적인 용어를 대체하는 용어 제시
- (연구결과) 개정필요 자치법규 71개(조례 57, 규칙 14)

계		장애를 위원회 해촉 사유로 규정	피성년후견인, 피한정 후견인을 결격시유로 규정	장애인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항	기타 장애차별 조항
	71	52	2	10	7
조례	57	44	1	8	4
규칙	14	8	1	2	3

#### □ 장애 차별적 용어 개정안

- (추진목적)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조사연구 결과를 공유하여 자치법규가 일괄정비 될 수 있도록 독려
- (개선방안)

연 번	개정 전	개정 후
1	"심신장애"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	" <b>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</b> " 또는 " <b>심신상의 사유</b> "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	"피성년후견인 · 피한정후견인"	" 삭제 "
3	"일반인"	"비장애인"
4	"인천시 장애극복상", "장애극복과 사회 적응"	"장애극복상"폐지, "사회적응"

## □ 군 구의 자치법규(조례,규칙) 상 장애 차별적 용어 현황(추정수치)

○ 장애 차별적 용어 개정안에 따라 파악된 군·구의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상 차별적 용어의 조문내용 포함 현황으로 정확한 수치는 향후 군·구별 검토 후 취합 필요

(단위 : 개)

	계	심신장애	피성년후견인, 피헌정 후견인	일반인	장애극복
	197	165	23	8	1
중구	6	4	2	0	0
동구	21	17	3	1	0
미추홀구	20	18	0	1	1
연수구	22	21	0	1	0
남동구	10	8	2	0	0
부평구	20	16	3	1	0
계양구	34	30	3	1	0
서구	35	30	4	1	0
강화군	11	8	2	1	0
옹진군	18	13	4	1	0

<sup>※</sup> 군구별 장애 차별적 용어 개정안에 대해 부서별 검토 후 개정여부 판단 필요